• 소통의 연수 • 통합의 연수 • 안전한 연수



# 연수구보

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(우)21967 ☎ 749-7392 / FAX 749-739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	관	의	장
람				

부록 제1412호 2023. 10. 30.(월)

7	- 1
<u> </u>	7/1
LO	

0	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-1589호(인천광역시 연수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
	(안) 입법예고)
0	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-1592호(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를 위한
	열람·공고)
0	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-1613호(사모지근린공원 조성사업(4차)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림
	공고)
0	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-1617호(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(4차)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림
	공고)
[5	보 시]
0	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3-82호(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) ······ 33
	회
	람

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-1589호

인천광역시 연수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(안)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연수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10월 24일

##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

### 1. 제정이유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와 관련하여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채용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공무원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적용
-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법 및 근거 마련
- 비공무원 채용절차 관련 표준 양식 제시

### 3. 의견제출

이 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(참조:총무과장,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(전화: 749-7166, FAX: 749-715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 · 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1부. 끝.

### [붙임]

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 제 호

###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 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채용비리" 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·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, 평정 기준, 평정 결과 산정, 그 밖의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,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·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·지시·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2. "근로자" 란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소속기관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,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.
- 3. "공무직근로자" 란 제2조제2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.
- 4. "기간제근로자" 란 제2조제2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.
- 5. "단시간근로자"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.

- 6. "채용권자" 란 근로자의 채용·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인 천광역시 연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근로 자의 채용에 관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채용부서의 장을 말한다.
- 7. "채용부서"란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부여하고 복무 및 임금 등을 관리하는 구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.
- 8. "인사부서"란 근로자의 현원과 복무를 종합적으로 관리·감독하는 총무과를 말한다.
- 9. "부정합격자"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(이하 "구"라 한다)와 그 직 속기관, 사업소, 하부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.
  - ②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, 단체협약 또는 조례 및 시행 규칙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.
- 제4조(비공무원 채용심의위원회)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비공무원 채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해야 한다.
  -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· 의결한다.
  - 1. 근로자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
  - 2.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
  - 3. 그 밖의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'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'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사전 심사한 경우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

아니한다.

- 제5조(심의위원회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인사부서의 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 심의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 다만, 채용 업무 경험이 있거나, 노동관계 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공무 원을 우선적으로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  - ④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인사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.
- 제6조(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)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심의위원을 선임할 때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.
  -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  -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  - 2.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
  - 3.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  - 4. 그 밖의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  -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심의위원이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

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- ②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- ③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- 제8조(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)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·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, 안건내용을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.
  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④ 회의의 자료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. 다만,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.
  -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,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.
  - 1. 일시 및 장소
  - 2. 참석위원
  - 3.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
  - 4.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
  - 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심의·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  - ⑦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은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  - ⑧ 심의위원회는 심의 · 의결 안건이 있을 때마다 소집하고, 해당 안건의

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.

-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.
- 제9조(채용원칙)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, 성별, 신체조건, 용모, 학력,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·장애인·여성·저소득층·북한이탈주민·다문화가족·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때 제한경쟁 방식의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직종별·직급별 응시자격은 별표 1의 응시자격 기준표를 따르며,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  -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「국가유공자법」"이라 한다)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, 채용과 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한다.
  -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,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·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·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  -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, 채용규모,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.

- 제10조(채용부서의 의무) ① 채용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,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  -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·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, 필기 문제,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 으로 반출해서는 아니되며, 검수·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해야 한다.
  -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,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, 검수·확인이 필요 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해야 한다.
- 제11조(채용절차 등)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따라 채용하며, 제1호와 제5호의 절 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. 다만, 원활한 인력 수급 등의 이유로 별도의 자체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.
  - 1. 서류전형
  - 2. 필기시험
  - 3. 인·적성검사
  - 4. 실기시험(체력검정 포함)
  - 5. 면접전형
  -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,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, "국민체력100 인증제도"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.
- ③ 채용권자는 인성·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 제12조(채용계획 수립 등) ①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

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목적, 소요예산, 자격조건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인사부서 및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사전협의해야 하며, 채용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- ② 채용부서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시기, 채용규모, 모집단위, 지원자격, 채용조건, 전형단계별 평가방법, 선발배수,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,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.
- ③ 기간제근로자 채용부서에서는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4조에 따라 사전 승인받은 범위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- ④ 채용부서는 수립한 채용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후 채용 결과를 인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.
- 제13조(채용공고)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.
  - 1.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, 업무내용, 응시자격, 보수 및 계약기간 등
  - 2.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
  - 3.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
  - 4.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
  - 5. 전형시기 및 방법(시험과목 및 배점비율)
  - 6.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
  - 7. 그 밖의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
  -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해야 하며, 늦어도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한다. 다만,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

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 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·단시간근로자의 채용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.
- 1. 휴직·파견·퇴직·해고 등에 따른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6개월 이하의 기간제·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
- 2.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④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·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
- 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
-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상황
- 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채용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.
- 1.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,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
- 2.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
- 3.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
- 4.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,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

다시 채용하는 경우

- 5. 기간제근로자를 동종 · 유사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
- 6.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, 선발취소,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에 따라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
- ⑥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다.
- ⑦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채용신체검사서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채용부서가 부담해야 하고, 채용신체검사서는 「건강검진기본법」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.
- 제14조(심사위원 선정 등)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,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, 실기시험, 면접시험,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·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할수 없다.
  - 1.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
  - 2.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
  - 3.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
  -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. 다만,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 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- ③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,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 다만,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전형에서 외부위원을 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.
- ④ 심사위원으로 위촉·임명된 사람은 채용권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제15조(심사위원의 제척·회피 등)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.
  - 1. 응시자와 친족관계, 근무경험 관계, 교우,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사람
  - 2.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
  - 3.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
  - 4. 그 밖의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 -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심사위원 스스로가 제1 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,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, 채용 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한다.
  -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, 그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. 이 경우 회피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  -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.
  -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

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그 사람을 구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.
- 제16조(원서접수) ① 근로자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.
  - 1. 응시원서(별지 제3호서식)
  - 2. 자기소개서
  - 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(별지 제4호서식)
  - 4.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
  - ②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용서류에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. 다만,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 한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.
  - 1. 구직자 본인의 용모·키·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
  - 2.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· 혼인여부 · 재산
  - 3.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·직업·재산
- 제17조(서류전형)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.
  -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, 평정 항목, 배점 기준,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.
  - ③ 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, 다음 전형의 일시·장소, 응시

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- 제18조(필기전형 등)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, 시험 과목, 문항 수,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.
  -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심의위원회 심의 ·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.
  -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,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.
- 제19조(면접전형)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(필기시험·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·실기시험 합격자)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.
  -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, 배점 기준,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.
  -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.
  -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- 제20조(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)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2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. 다만, 「국가유공자법」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.
  -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제1항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「국가유공자법」 등에 따

- 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해야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, 동점자처리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른다.
-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해야 한다.
- 제21조(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)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른다.
  -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·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해야 하며,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.
  -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,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, 채용 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,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(소수점 이하는 1명)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.
  -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 개월까지로 하되, 해당 분야의 다음번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한다.
  -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 유효기간은 채용 계획 수립 시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- 제22조(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) ① 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.
  -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2명 이상의 점검위원으로 구성하며, 인사부서 및 채

- 용부서의 장과 담당자는 제외한다.
- ③ 점검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며,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.
- ④ 점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⑤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,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.
- ⑥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·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·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- 제23조(채용결격사유) ① 근로자의 채용결격사유에 관해서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를 준용한다.
  - 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를 받아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.
- 제24조(채용공정성관리)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 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, 서류 및 면접전 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.
  - ② 감사부서는 채용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.

- ③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(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·외가 4촌 이내)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 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.
- 제25조(합격취소 등)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1.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
  - 2.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
  - 3. 거짓,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
  - 4. 그 밖에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
  -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를 할 때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, 최종합격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정채용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.
- 제26조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  -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3과 같이 진행하며, 그 밖에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.
- 제27조(채용 구비서류)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 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, 제7호부터 제9호 까지의 서류는 업무 특성상 학력이나 자격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 또는 임금의 계산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.
  - 1. 응시원서 1부(별지 제3호서식)
  - 2. 자기소개서 1부

- 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(별지 제4호서식)
- 4.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(별지 제5호서식)
- 6. 공정채용 확인서 1부(별지 제6호서식)
- 5.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(별지 제7호서식)
- 7. 최종학력증명서
- 8.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
- 9.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- 제28조(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)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. 다만,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(전화, 전자우편주 소 등)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.
- 제29조(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) 구청장은 상시·지속적 업무 (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)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·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<별표 1>

## 응시자격 기준표(제9조제2항 관련)

## □ 자격증·경력을 요하는 제한경쟁채용

구 분	자 격 기 준
시설관리	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이면서, 자격 취득 이후 해당 분야 실무경 력 1년 이상인 사람
운전원	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, 자격 취득 후 대형승합차 경력 1년 이 상인 사람
조리사	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별표 2 중 중직무분야 "조리"의 조리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
사무원	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별표 2 중 중직무분야 "사무"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

## □ 사회형평적 인력운용을 위한 제한경쟁채용

구 분	자 격 기 준
국가유공자	「국가유공자법」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
저소득층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
북한이탈주민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다문화가족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문화가족

\* 본 서식은 채용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.

### <별표 2>

## 채용시험 가점기준(제20조제1항 관련)

	구 분	부가점수
	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
법정 가점	1. 「국가유공자법」제29조 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 3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 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 5.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0조 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	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~10%
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	
사회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	- -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
형평 기점		
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	

- ※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,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(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).
  - 또한,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%를 초과할 수 없음
- ※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. 단, 법 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
- \* 본 서식은 채용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.

### <별표 3>

##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(제26조제2항 관련)

- ◇ 피해자: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
  -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
    - (피해자 특정 가능 시)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**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** 부여
      - \* 예: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,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
      - 최종 면접단계 피해 →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
      - **필기 단계** 피해 → 해당 피해자 **면접응시 기회** 부여
      - **서류 단계** 피해 → 해당 피해자 **필기응시 기회** 부여
    - (피해자 특정 불가 시)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
      - \* 예: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,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
      - 최종 **면접단계** 피해 → 피해자 그룹 **면접 재실시**
      - **필기 단계** 피해 → 피해자 그룹 **필기시험 재실시**
      - 서류 단계 피해 →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
  - ② 부정합격자 확정·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
    -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

### 〈별지 제1호서식〉

관련문서	ㅇㅇㅇㅇ과-0000호			
채용구분	[ ]공무직 [ ] 기간제	전형구분	[ ] 서류전형 [ ] 면접전형	

## 서 약 서

본인은 OOOOO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(임명)되면서 다 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심사위원으로 위촉(임명)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.
- 2.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.
- 3.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.
- 4. 기타 공정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.

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 구의 심사위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에 동의하며, 제반 보안사항 유출 등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 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소 속

직 위

성 명 (서명)

00000 귀하

# 채용 심사위원 기피(회피)신청서

□ 채용부서 :						
□ 채용분야 :						
□ 기피(회피)대성	y자 : 명					
수험번호	성명	생년월일	사유			
□ 기피(회피) 사	ਜੰ					
		면, 지연, 혈연 등 당시자의 평정에 침				
소속	직위	성명	(서명)			

# 응시원서

1. 공통사항							
지원분야					접=	) 는번호	< 미기재 >
성 명	(한글)						
(본인휴대폰) <b>연 락 처</b>			전자				
면 즉 시	(비상연락처)	우편					
생 일	< 심사위원이	세게 미제공	분(당사자	확인용	으로만 활	용) > * 성	<b>생년은 미기재</b>
주 소	< ,	님사위원에 <b>?</b>	게 미제공	분(당사지	가 확인용의	으로만 활용	<u>용</u> ) >
지원 자격		용계획에서				내용을 작	성)
여부	□ <지원분야 1>, □						
우대 사항 여부	( <sup>大</sup> □ <우대사항 1>, □	Ⅰ용계획에시 ╭우대사항				내용을 작	'성)
가점 사항	□ 취업지원 대상자		 업지원 디				 □ 5% □ 10%
기점 사항 여부	□ 장애인 □ 저소득						
2. 응시자격사항(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) - <mark>필요 없을 시 삭제</mark>							
	자격증명				예정)일		자격 검정기관
자격증					,-		
	근무기관	근두	무기간		직 위	 2	담당업무
경 력							
3. 우대사형	_ <b>항</b> (채용계획에서 정한 우	대사항에 [	대한 구처	적인 니	내용을 작성	ਰ) - <b>필요</b>	없을 시 삭제
지 거 자	자격증명		자격증	취득(	예정)일		자격 검정기관
자격증							
おユル	시험일자	인종	5번호		인증동	급	시행기관
한국사							
※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)							
※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							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
		20	년	월	일		
성 명 : (인)							

\* 본 서식은 채용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.

##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○○○○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

□ [필수]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-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국적, 주소, 생년월일, 연락처, 계좌은 행, 계좌번호, 전자우편주소, 학력, 학위, 수상 실적, 경력·재직사항, 가족사항, 차량번호	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급 여지급,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 로자 인사·복무 기록관리, 청사출 입관리	근로관계 종료 후 3년

A1 A1	-1.1	33 43 -3 43 -7	a _1		- 41 -1 -1 -1 -1 -1
위와	같이	개인정보들	수집	・이용하는데	동의하십니까?

□ 동의함	□ 동의하지	않음

#### □ [필수]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내역
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국가유공자정보, 장애정보, 북한이탈주민정보	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법 적사무처리	근로관계 종료 후 3년

####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□ 동의함	□ 동의하지	않음
□ 동의암	□ 동의하시	않음

#### □ [필수] 기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.이용 목적	보유기간	
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	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	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	
전자우편주소	관리	10년	

####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□ 동의함	□ 동의하지	않음

※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 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ㅇㅇㅇㅇㅇ장 귀하

##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<u>공</u> 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<u>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</u>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#### 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<b>공식자</b>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및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□ 비해당 □
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<u>부패행위</u> 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・관리・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・여비 부당수령: 해당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	해당 □ 비해당 □
3-1. <b>해당 부패행위</b> 로 <u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</u> 된 사실이 있는지	해당 □ 비해당 □
3-2. 위 <b>퇴직일</b> 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u>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	해당 □ 비해당 □
4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</u>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□ 비해당 □
4-2. 그 형의 <b>집행이 종료된 날</b> 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<b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b> (5년 내)	해당 □ 비해당 □
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□ 비해당 □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<u>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</u>	해당 🗆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🗆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	20	년	월	일	
생년월일				지 원 자	(서명

## 공정채용 확인서

성 명:

생녀월일:

위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근로자 채용 전형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,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.

- 1.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.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
- 2.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한 위·변조 및 허위 사실 기재
- 3. 그 밖에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

20 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ㅇㅇㅇㅇㅇ장 귀하

##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〇〇〇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- ①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-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예시 :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(아동・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, 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
20 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ㅇㅇㅇㅇㅇ장 귀하

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-1592호

#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를 위한 열람·공고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(변경) 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.

2023. 10. 25.

##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- 1. 사업시행지(변경없음)
  - O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94번지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  - O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
  - O 사업명칭: 연수동 594번지 일원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
-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  - O 사업의 면적 : 4.639.4㎡ (변경없음)
  - O 건축면적 : 924.838㎡ (변경없음)

- O 연 면 적
  - (기정) 15,521.927㎡ (건폐율 19.934%, 용적률 76.985%)
  - (변경) 15,568.097㎡ (건폐율 19.934%, 용적률 76.985%)
- O 용 도
  - 주차장,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, 판매시설 (변경없음)
- O 주차대수
  - (기정) 339대 지하3층~지상1층 236대, 철골주차장 103대
  - (변경) 348대 지하3층~지상1층 240대, 철골주차장 108대
-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  - O 사업자명 : 주식회사 와이제이양지(YJ)
  - 주 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60번길 15, 2층 201호
- 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(변경없음)
  - O 실시계획인가일 ~ 2023. 12. 31.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(변경없음)
  - O 「붙임」참조
- 7.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
  - O 열람 기간 : 2023. 10. 25. ~ 2023. 11. 7.
  - O 열람 장소 :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(☞749-8652)
- 8. 관계서류 : 게재 생략(열람장소에 갖추어 둠)

# 토지조서

소자	<b>내지</b>	지목	면적	(m²)	소 유 자		관계인			비고
동	지번	시독	공부	편입	성 명	주 소	성명(명칭)	주 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미끄
연수동	594	주차장	4,639.4	4,639.4	주식회사 와이제이 양지(YJ)	인천광역시 서구 청 라커낼로 260번길 15, 2층 201호	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	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	신탁	

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-1613호

## 사모지근린공원 조성사업(4차)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-172호(2020. 5. 25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, 같은 고시 제2021-208호(2021. 6. 28.)로 변경 고시된 '사모지근린공원 조성사업'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,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2023년 10월 30일

#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- 1. 사 업 명: 사모지근린공원 조성사업(4차)
- 2. 사 업 위 치: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56-5번지 일원
- 3. 사업 시행자: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- 4. 서류의 종류 및 명칭: 별첨 「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계 서류」참조
- 5.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: 2023. 10. 30. ~ 2023. 11. 13. (14일 이상)
- 6. 열람장소 및 방법
  -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
     (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, 4층 공원녹지과/☎032-749-8723)
  -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
     (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, 백양빌딩 405호/☎032-569-7566)
- 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
  -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-23번지 등 11필지
  - 토지소유자: 길○수(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○) 외 9인
- 8.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
  -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-28번지 관정 등 총 244건
- 9. 기 타
  - 관계서류는 연수구 공원녹지과(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)에 비치하고 있으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  -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.

# 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(4차)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-210호(2020. 6. 15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, 같은 고시 제2021-203호(2021. 6. 28.)로 변경 고시된 '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'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,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2023년 10월 30일

#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- 1. 사 업 명: 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(4차)
- 2. 사 업 위 치: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25-5번지 일원
- 3. 사업 시행자: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- 4. 서류의 종류 및 명칭: 별첨 「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계 서류」참조
- 5.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: 2023. 10. 30. ~ 2023. 11. 13. (14일 이상)
- 6. 열람장소 및 방법
  -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
     (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, 4층 공원녹지과 / ☎ 032-749-8722)

-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
   (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, 백양빌디 405호 / ☎ 032-569-7566)
- 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
  -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25-4 등 7필지
  - 토지소유자: 김O신(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O) 외 5건
- 8.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
  -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25-4 관리사 등 총 188건
- 9. 기 타
  - 관계서류는 연수구 공원녹지과(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)에 비치하고 있으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  - 열랑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수 없습니다.

#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10.25.

###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#### ○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

도로명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관련지번	신규도로명주소
2009.07.06	학익동, 옥련동 일원의 옛이름에서 유래하여 제	옥련동 79-1 외 1필	인천광역시 연수구
	명	지	독배로 113-2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(☎749-7602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i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- ►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(도로명주소의 사용 등)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▶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- 도로명주소 변경 등
- ▶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(도로명의 변경 절차) 및 제26조(건물번호의 변경·폐지 절차)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▶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(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)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10.25.

###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#### ○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

도로명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관련지번	신규도로명주소
2019.03.15	하모니로 시작점에서 2260m 떨어진 오른쪽으 로 분기되는 도로	송도동 10-46	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26번길 15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(☎749-7602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- ►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(도로명주소의 사용 등)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▶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- 도로명주소 변경 등
- ►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(도로명의 변경 절차) 및 제26조(건물번호의 변경·폐지 절차)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▶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(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)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